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51

발의연월일: 2020. 7. 24.

발 의 자:이상헌·김남국·양정숙

김경만 • 이상직 • 김민석

이워택・박 정・야장(비)

이해식 · 임오경 · 김회재

이용호 · 오영화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운영인력 등 선수단 구성원에 대해 규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6항·제7항 신설 및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"말한다"를 "말한다. 이하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4항에 따른 운동경기부(이하 "직장운동경기부"라 한다)에서 스 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8 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,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표준계약서의 작성) ①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서상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

-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준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4(합숙소의 관리)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0조의5(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)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한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및 선 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, 합숙소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,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매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~	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	⑤
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	
업무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	
치구의 구청장을 <u>말한다</u> )이 지	말한다. 이하 같다
도·감독한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⑥ 제4항에 따른 운동경기부
	(이하 "직장운동경기부"라 한
	다)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
	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・군
	수・구청장은 제18조의3에 따
	른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, 직장운
	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
	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1
	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
	가 지도・감독할 수 있다.
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	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의3(표준계약서의 작성) ①
	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

<신 설>

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 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 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
-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서상 필수 준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준수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4(합숙소의 관리) ① 직 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 유 등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 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합숙소를 운영하여야 한

<신 설>

<u>다.</u>

제10조의5(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)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· 운영한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 약서의 사용 및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, 합숙소원 연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매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